

의안번호	제 527 호
의 결 연 월 일	2016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박병진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6년 11월 22일

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병진 의원 대표발의)

의
번
호
527

발의연월일 : 2016년 11월 22일
발의자 : 박병진, 임순묵, 이광진,
 강현삼, 김봉희, 장선배,
 박한범

1. 개정이유

골재채취료 분할납부요건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하고, 가산금 징수 및 요금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을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골재채취사업자의 분할납부요건을 완화함(안 제5조제3항)

나. 점용료 가산금징수, 유품 부과·징수 근거법령 정비(안 제5조, 안 제9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불임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불임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협의 : 재난안전실 치수방재과와 협의되었음
- 라. 입법예고 : '16. 11. 8. ~ '16. 11. 13.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(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에는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6개월씩 균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 징수하고 그 이후 분은 매년 1월과 7월에 납부한다.

제5조제5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골재 채취료를 제3항에 따라 납부하던 중 별표 1 제5호에 따른 채취료 산정금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, 이미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은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분 할 납부한다.

⑥ 점용료 등을 납입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징수의 절차에 따른다.

제9조 중 “「충청북도 도세 조례」를”을 “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

한 법률」 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점용료 등의 징수) ① (생략)</p> <p>② 매년 점용료 등의 징수는 영 제42조제2항을 따른다. <u>다만 골재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, 채취료의 납부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허가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붙여 6개월씩 균할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 징수하고 그 이후 분은 매년 1월과 7월에 납부 한다.</u></p> <p>③ 골재 채취료를 제2항에 따라 납부하던 중 제2조제1항의 별표1 제5호에 의한 채취료 산정금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, 기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은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분 할 납부한다.</p>	<p>제5조(점용료 등의 징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 <후단 삭제></p> <p>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(골재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에는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6개월씩 균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 징수하고 그 이후 분은 매년 1월과 7월에 납부한다.</p>

<신 설>

④ (생 략)

⑤ 점용료 등을 납입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.

<신 설>

제9조(준용) 요금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충청북도 도세 조례」를 준용한다.

④ 골재 채취료를 제3항에 따라 납부하던 중 별표 1 제5호에 따른 채취료 산정금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, 이미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은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분할 납부한다.

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

<삭 제>

⑥ 점용료 등을 납입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징수의 절차에 따른다.

제9조(준용) -----

----- 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을 --.

관 계 법 령

[하천법]

제37조(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)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, 그 밖의 하천사용료(이하 "점용료등"이라 한다)를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사유(私有)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33조제1항제1호·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에 있어서 국가하천의 경우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·도지사가 그 하천을 유지·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·도지사를 그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본다.

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⑤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.

1. 공용·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
2.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
사업인 경우

3.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
[하천법 시행령]

제42조(점용료등의 징수)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(이하 "점용료등"이라 한다)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②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등의 전액을 한번에 징수하여야 한다. 다만,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(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2.4.10, 2016.6.28>

③ 하천관리청은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0.12.20>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점용료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